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222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권승형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2016. 10. 21. 체결한 매매 계약을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2016. 10. 24. 접수
제20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그가 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 할
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C은행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그보증 내역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B는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1. 25.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10. C은행에 대하여B를 대위하여
255,686,823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 18742호로 위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B는 원고에게 191,795,395원 및 그중191,739,083원에 대하여
2017. 4. 10. 부터 2017. 8. 7.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2017.8.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6. 10. 21.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2,580,000원에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청도 등기소 2016.10. 24. 접수제 20652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9호증,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0. 2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 11호증, 을제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 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B는 92,580,000원에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시가 733,752,000원 상당의 부산강서구 D토지 및 지상 건물과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963,462,205원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채무는 1,087,215원에 불과하고 실제 그 결제일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내역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92,580,000원이 그 시가에 상당 하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다거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부동산의 매도로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등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